

발의법안(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개

글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행정)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유상의 법률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률분야에서도 IT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¹⁾ 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 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60호, 제정안)이 2024년 7월 18일 권칠 승의원 등 11인의 발의로 국회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하고, 리걸테크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총 5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체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의 체계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리걸테크산업 육성 등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7조	기술개발 등
	제8조	자금의 지원
	제9조	업무의 위탁
제3장 리걸테크서비스의 제공 등	제10조	허가
	제11조	결격사유
	제12조	허가의 취소
	제13조	피해보상보험 계약
	제14조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제15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제4장 감독 및 시정조치	제16조	감독
	제17조	시정조치
	제18조	영업의 정지 등
	제19조	청문
제5장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과태료

주요내용

■ 리걸테크의 정의와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 리걸테크는 인공지능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18

¹⁾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줄임말로,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며,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의 법률서비스 버전으로 이해된다. 통상 인터넷의 보편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IT 기술발전을 법률시장에 활용하는 형태를 널리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의안번호 제2201960호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4p 참조, 2024년 9월).



보조하거나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 * 변호사 외에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채권추심업체 등을 포함
- "리걸테크서비스"는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①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②자동화된 법률 자문 ③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분야 예측 결과 ④자동화된 법률문서 작성수단 제공 ⑤법령, 판례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⑥논문, 보고서 등 법률자료의 제공으로 정의하고 있다.

■ 리걸테크산업 육성·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①리걸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 ②인력의 양성 ③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포함하는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

■ 리걸테크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등

-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개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기술의 실용신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며,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기술개발,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안 제7조 및 제8조).

■ 리걸테크서비스사업 허가제 도입

- (리걸테스서비스사업 허가 등) 리걸테크서비스 중 ①자동화된 법률 자문 및 ②법률분야 예측 결과를 제공하려는 자는 자본금,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를,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0조).
- (허가 취소)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허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

■ 피해보상 보험 가입

- 리걸테크서비스 중 ①자동화된 법률자문 및 ②법률분야 예측 결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3조).

■ 이용자별 리걸테크서비스의 제공 범위 차등화

- (법률분야종사자 대상 서비스)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4조).
- (일반인 대상 서비스)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를 "리걸테크서비스 전체"로 그 범위를 정하되, 법률 분야 예측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분야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5조).

■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

-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①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②그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6조 및 제17조).
- 허가 없이 리걸테크서비스 제공 시, 대상별 리걸테크서비스 제공 범위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안 제20조).

시사점

이 법률안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유업으로 가능한 일부 영역(자동화된 법률자문)이 허가업으로 전환되게 되어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신산업의 유연성 및 창의성 측면과 리걸테크 산업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



또한, 법률안에 따르면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리걸테크서비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 금지에 관한 「변호사법」제109조제1호²)에 저촉되는지나, 변호사인 리걸테크 창업자의 외부 경영전문가 선임, 애플리케이션 내 변호사 추천·노출 광고³) 등이 비변호사의 동업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변호사법」제34조⁴에 저촉되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호사법」위반여부는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중요 문제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현행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 2) 「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마. (생 략)
- 3) 의안번호 제2201960호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18p 및 19p 참조, 24년 9월
- 「변호사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에 대하여 그간 '대가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7.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4)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④ (생략)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23